

의안 번호	1731	[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4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4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4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평생교육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, 전 구민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- 「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」
 - 「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
- ‘평생교육기관’, ‘평생학습센터’, ‘평생학습 자원활동가’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 2호, 4호, 5호)
- 평생교육의 진흥 조문 신설(안 제3조)
- 평생교육의 진흥사업 구체적 명시(안 제4조)
- 평생교육 진흥사업 민간위탁 조문 신설(안 제4조)
-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자 명확·구체화(안 제7조)
-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(안 제17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평생교육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며,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
- 따라서,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에 부합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- 학교 등을 통한 기존의 정규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계층의 구민,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평생교육법

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·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협의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군·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군·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·군·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,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④ 시·군·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

시할 수 있다.

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- 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5. 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.

③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,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